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목개정 2020. 3. 1]

제정일	2007.11.14
개정일	2020. 3. 1
개정차수	2차
담당부서	학사학위지원센터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2.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전공심화과정 졸업 및 입학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0. 3. 1)
4. 전공심화과정 자체평가 (신설 2020. 3. 1)
5.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연차평가) 실시 (신설 2020. 3. 1)
6.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0. 3. 1)

제 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에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2.13)

제 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 (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1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